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2014. 8. 8.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나. 그 밖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나. 가로수 조성의 원칙 및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가로수와 관련된 행위 규정을 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다.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절차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 라. 하자담보 및 가산금 관련 규정의 인용 법령을 정비함.(안 제19조 및 제21조)
- 마.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따른 서식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 제출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별표 1,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등)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청”이라 함은”을 ““관리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로수”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3. “바꿔심기”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 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 나.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다.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5호 중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을 ““가로수 지주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을 “가로수 보호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내”를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으로, “시설물”을 “인공설

치물”로 하고, 같은 제8호 중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을 “가로수 보호대”란”으로 한다.

제2장 다음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로수의 조성) ① 가로수는 관리청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의3(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롭게 포장·교체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재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제5조제2항제5호 중 “이식시”를 “재배수인 경우”로, “단근작업”을 “뿌리끊기”로, “발달한 재배품일 것”을 “잘 발달하였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를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7.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8.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9. 그 밖에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뀌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 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호 중 “갱신·보식”을 “바뀌심기·메워심기”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청은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형과 토양 보전)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 식재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갱신을”을 “바뀌심기를”로, “보식”을 “메워심기”로, “등으로 한다”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식·갱신”을 “메워심기·바뀌심기”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과 같다”을 “별표 1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제19조 및 제20조 관련)

부과대상	시행구분	부과금액 산출	비고
1.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	관리청 시행	·공사: 도급공사 설계비 ·직영: 옮겨심기 경비 또는 제거비	
	원인자 시행	·도급공사 설계비	
2. 벌채, 수간절단, 또는 강도의 가지치기로 50% 이상 고유수형 상실 등으로 조정수가치가 없는 경우	관리청 시행	·공사: 도급공사 설계비 ·직영: 정리비 및 대체 식재비	
	원인자 시행	·도급공사 설계비	
3. 20% 이상~5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	관리청 시행	해당 수목가격의 20~50% + 재료비 + 작업비	
4. 10% 이상~2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	관리청 시행	해당 수목가격의 10~20% + 재료비 + 작업비	
5.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피해	관리청 시행	관리시설 재료비 + 작업비	

- ※ 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가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가격 적용
 3. 원인자가 시행할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관리청의 승인 전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left;"> <p style="font-size: 2em; margin: 0;">가로수</p> <p style="margin: 0;">[] 심고 가꾸기</p> <p style="margin: 0;">[] 옮겨심기</p> <p style="margin: 0;">[] 제 거</p> <p style="margin: 0;">[] 가지치기</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em; margin: 0;"> <p>증인서</p> </div> </div>					
신 청 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일까지(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W)		
	납부기간				
<p>「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5em; margin: 0;">인천광역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p> <p>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로 (고가도로·지하도로는 제외한다)</p> <p>나. 광역시도등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p> <p>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p>	<p>제1조 (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p> <p>제3조(정의) -----</p> <p>1. “가로수”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2.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p>	<p>2. “관리청”이란 ----- ----- -----.</p>
<p>3. “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p>	<p>3. “바꿔심기”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p>
<p>4.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p>	<p>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나.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 병해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p>
<p>4.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p>	<p>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p>
<p>5.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p>	<p>5. “가로수 지주대”란 ----- ----- ----- -----.</p>
<p>6.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p>	<p>6. “가로수 보호틀”이란 ----- ----- ----- ----- -----.</p>

현행	개정안
<p>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p> <p>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이 포장·교체</p> <p>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p>1. 도로의 신설,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p> <p>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p> <p>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p> <p>4.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상충여부</p> <p>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 ----.</p> <p>1.~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4. (생략)</p> <p>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u>단근작업</u>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u>발달한 재배품일 것.</u></p> <p>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u>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u>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 할 수 있을 것.</p>	<p>5. 식재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p> <p>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p> <p>② ----- -----.</p> <p>1. ~4. (현행과 같음)</p> <p>5. 재배수인 경우 ----- ----- <u>뿌리끊기</u> ----- ----- <u>잘 발달하였을 것.</u></p> <p>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u>충족하고</u> ----- -----.</p>
<p>제10조 (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u>고사 가로수</u></p> <p>2. 수피 및 수형 불량 등 미관을 해치는 가로수</p> <p>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p> <p>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p> <p>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p> <p>6. 기타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p>	<p>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고사 가로수</u></p> <p>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p> <p>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p> <p>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p> <p>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p> <p>6.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p> <p>7.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p> <p>8.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p> <p>제11조(가지치기) ①~② (생략)</p> <p>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2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갱신·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p> <p>3.~6. (생략)</p> <p>제13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p>	<p>9. 그 밖에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p> <p>② 제1항에 따라 바뀌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 할 수 있다.</p> <p>제11조(가지치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병해충의 방제)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바꾸심기·메워심기 ----- ----- -----.</p> <p>3.~6. (현행과 같음)</p> <p>제13조(외과수술 등) ① 관리청은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p>

현행	개정안
<p><u>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u>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14조(지형과 토양 보전)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 식재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관리시설물)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p> <p>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시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p>	<p>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16조(점검) ① (생략)</p> <p>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u>보식</u>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u>보식·갱신</u> 등 관리</p>	<p>제16조(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바뀌심기를</u> ----- ----- <u>메워심기</u> ----- -----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메워심기·바뀌심기</u>-----</p>

현 행	개 정 안
<p>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9조(원인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목이식·제거·원상복구 등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p>	<p>-----.</p> <p>제18조의2(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제19조(원인자부담금) ① ----- ----- -----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에 따라 ----- -----.</p> <p>②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p>

현행	개정안
<p>를」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별표 1과 같다.</u></p>	<p><u>한 법률」</u>-----</p> <p>-----</p> <p>-----</p> <p>-----</p> <p>-----</p> <p>③ -----</p> <p>-----</p> <p>---- <u>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u></p>
<p>제20조 (훼손자부담금) ①~② (생략)</p> <p>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별표 1과 같다.</u></p>	<p>제20조 (훼손자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 <u>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u></p>
<p>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략)</p> <p>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u>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u></p> <p>③ (생략)</p>	<p>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보고) ① (생략)</p> <p>② 관리청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을 <u>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2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을 <u>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 자원
 -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에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4.7.15] 제2조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 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 삭제 <2008.6.20>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